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거래내역 신고 대상 자산의 범위 확대 등〉
■ 황명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23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명선의원 등 17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9.
3. 회부연월일 : 2025.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과 가상자산 보유·거래에 대해 일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범위가 협소하고 신고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권(채권, 펀드 등)과 부동산 거래 역시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적절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도 신고 기준이 부재하여, 공직자의 재산 이동 및 변동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6조의2).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거래내역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현행 주식 및 가상자산에서 증권, 부동산 및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한편, 월간 종목별 합계 1억원 이상의 증권 거래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u>주식</u>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의2(<u>증권 등</u> 거래내역의 신고) ① ----- ----- ----- ----- ----- <u>증권, 부동산</u> ----- ----- -----,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월간 종목별 합계 1억원 이상의 <u>증권 거래</u> 2. 월간 종류별 합계 1억원 이상의 <u>가상자산 거래</u>
<신설>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 ④ (생략)	<u>3. 부동산 거래</u> ② ~ ④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로 하여금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¹⁾

개정안은 거래내역 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주식 외의 증권과 부동산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월간 종목별 합계 1억원 이상의 증권 거래, 월간 종류별 합계 1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와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주식 외에 채권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 투자나 부동산 매매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 등 재산상의 이익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그 밖에 공공부문의 행정작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등이 이들 자산

1)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을 거래하는 행위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²⁾ 재산변동 내역을 상시적으로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 운영의 내실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거래내역 신고 대상인 증권의 범위에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운영상 증권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제3호다목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식, 국채, 공채 및 회사채이고,³⁾ 그 밖에 열거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

2) 시장금리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을 금리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공직자가 취득하는 경우 직무 수행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고려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3)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사.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아.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자.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이나 펀드 등 다른 금융투자상품은 예금 항목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거래내역 신고의 대상인 증권도 주식, 국채, 공채 및 회사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은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으로 구분되며 주식은 지분증권의 일종으로 규정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바,⁴⁾ 동 법률상 증권의 개념에 따를 경우 거

5. 주식매수선택권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

③~⑦ (생략)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③ 이 법에서 “채무증권”이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유사(類似)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지분증권”이란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래내역 신고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는 주식, 국채, 공채 및 회사채 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까지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권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

⑤ 이 법에서 “수익증권”이란 제110조의 수익증권, 제189조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과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전등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발행과 동시에 투자자가 지급한 금전등에 대한 이자, 그 밖의 과실(果實)에 대하여만 해당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된 증권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상의 권리(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3.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황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서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사채

3의2. 「은행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3.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3의4. 「보험업법」 제114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4.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⑧ 이 법에서 “증권예탁증권”이란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그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⑩ (생략)

를 제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되, 투자계약증권과 지분증권·수익증권·증권예탁증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동법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 및 제178조·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의 개념에 따르는 경우에도 일부 특정한 법조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투자계약증권과 지분증권·수익증권·증권예탁증권 중 일부 증권이 개정안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공직자윤리법」은 주식 등 거래내역 신고와 관련하여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적 조치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공개대상자의 성실한 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기본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거래내역 신고 대상인 증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둘째, 금융투자상품 중 증권만을 거래내역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고위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과 윤리성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거래내역 신고 대상을 주식 외의 금융자산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공직자 등의 금융상품 투자 행위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증권 외에 파생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⁶⁾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 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증권
2. 파생상품
 - 가. 장내파생상품
 - 나. 장외파생상품

수익 추구도 증권을 통한 수익 추구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거래내역 신고 대상을 금융투자상품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거래내역 신고의 대상을 주식 외의 금융자산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증권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한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입법적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등 거래내역 신고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셋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 외에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의 내용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상시적인 신고의 무에 상응하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과 법 개정의 실익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주식 외에 증권과 부동산을 재산변동 신고 시에 그 거래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추가하는 내용 외에 월간 종목별 합계 1억원 이상의 증권 거래, 월간 종류별 합계 1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주요 거래내역에 대한 수시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실상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상응하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 바, 현행의 정기적 신고 제도가 이해충돌의 방지 등 공직윤리 확립에 미흡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시신고 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하여금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법무부장관 등에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 등은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조사를 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제7항 및 제8항),⁷⁾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

7)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⑥ (생략)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등록하였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

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의 수수(收受)

다.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직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군검사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군검사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⑫ (생략)

실이 인정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등 조치를 하는 한편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 등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8조의2).⁸⁾

그리고, 현행법 제6조의2제4항은 거래내역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⁹⁾ 개정안과 같이 증권, 가상자산 및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수시신고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거래내역 신고사항에 대

8)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와 처리) 제8조의2(심사결과와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2.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하거나 심사에 응한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③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 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함께 할 수 있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9) 각주 1) 참조

한 심사와 관리도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정기 재산변동신고에 대한 재산심사와 별개로 개정안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는 중요 거래내역 신고사항에 대해 정기적 심사에 상응하는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시신고 제도 도입의 실익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수시신고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구비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등 현실적인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인사혁신처는 현재 공개대상자의 경우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1년간의 모든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여 재산심사 시 확인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¹⁰⁾에 따라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는 있으나 주식·가상자산과 같이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규정은 미비하다는 점에서 부동산을 거래내역 신고의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그 밖의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으로,

10)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대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⑦ (생략)

현행 규정은 연 1회 주식 등 자산의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별개로 30일 이내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공개대상자에게 중복된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대상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여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증권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은 채무·지분·수익·투자계약·파생결합·증권예탁증권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식·국공채 뿐만 아니라 출자지분, 펀드 등 다양한 자산을 포함할 수 있는 바, 신고대상인 증권의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부동산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높지 않아 주식·가상자산과 같이 거래내역을 신고할 필요성이 낮은 점,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법령이 이미 존재¹¹⁾하는 점, 신고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가

11)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6. (생략)

③~⑦ (생략)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

불분명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상시적인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요구하게 되어 개인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및 관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6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①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
2.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소속 공공기관이 택지개발, 지구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